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3항제5호 단서를(현행대로 하기 위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지역적 여건에 따라 법 제4조제3항에 의
한 심의를 거쳐 총 건설세대수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건설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4호중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
주택”을 “공동주택”으로 한다.

제33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영 제54조제1항에 의하여 재개발사업기금으
로 적립되는 비율은 당해년도의 도시계획세
징수 총액의 100분의 15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적용례) 제3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회계년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주택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25”
로 한다.

제12조제4호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75”
로 한다.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노상주차장 하역주차구간
의”를 “하역주차구간의”로 한다.

안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노상주차장 및 공영노외주차장”
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
영주차장”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조같은항
단서중 “노상주차장 하역주차구간의”를 “하
역주차구간의”로 하며 같은조제2항제1호중
“주차카드”를 “주차쿠폰”으로 하고, 같은조같
은항제2호 내지 제8호를 같은조같은항 제3호
내지 제9호로 하며, 같은조같은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주차요금 감면대상이 아니면서 주차시간측
정계기에서 주차요금을 감면받은 경우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장치 설치) ①시장은 공영주차장 사용자가
주차요금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체납하였거나 10만원 이상의
주차요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
한 자동차에 대하여 당해 주차요금 및 가산
금을 납부할 때까지 당해 차량의 운행을 제
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운행제한장치가
설치된 당해 차량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
임이 있는 자는 당해 주차요금·가산금 및
해제비용을 납부한 후 시장에게 차량운행제
한 장치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운행제
한 장치의 해제요청이 있으면 주차요금·가산
금 및 해제비용을 납부한 차량에 한하여 차
량운행제한장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운행
제한장치를 해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하
“해제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
는 기준에 의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차량운
행제한장치를 설치한 때부터 장치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까지의 주차요금은 징수하지 아
니한다.

1.주차장 운영시간 내에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 해제비용 미징수

2.주차장 운영시간 이외의 시간에 해제를 요
청하는 경우 : 해제비용 3만원 징수

제5조제1항 본문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